

2021년도 제3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1. 17.(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2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260건(안건번호 제2021-159899호~16152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59899호~159912호(순번 1번~14번)는 카페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59913호~159922호(순번 15번~24번)는 시정권고를 받은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저작권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어 있어 저작자가 이용허락 등 권한이 없는 점, 관리자가 적극적인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유행위를 허락한 것과 같이 보기도 어려운 점, 저작인격권자 측이 온라인서비스 내 후원 페이지의 관리자라고 하여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안건번호 제2021-159913호, 159917호, 159918호, 159921호, 159922호(순번 15번, 19번, 20번, 23번, 24번)는 현재 전송 중단된 상태이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23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2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1호 안전 회의록은 전부 공개하기로 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26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4번은 4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카페에서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및 영화 불법복제물을 각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4개 게시물이임.

(순번 2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을 50 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300원에 대여, 500원에 소장 가능함.

(순번 10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 중이며,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영화 전체 분량을 10,000원에 대여, 14,900원에 소장 가능함.

순번 2번~14번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의 후반부 약 32분을 제공 중임. 전반부 60분을 추가로 제공 중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심의대상 카페명은 '◇◇ ◇◇◇◇◇◇◇◇'로써, 해당 저작물과 관련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임.

(“◇◇◇◇◇” 게시판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현재 해당 게시판에는 운영자가 직접 작성한 총 4개의 게시물만 게시되어 있으나, 게시판의 마지막 게시물 순번이 52번인 것으로 보아 운영자가 아닌 회원들이 작성한 중간 순번의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추정됨.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저작물을 편집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히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권리자가 계열사 OTT 서비스에서만 독점 콘텐츠로 제공 중인바, 권리 활용을 통한 자사 경쟁력 확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합법 시장 내 제공 중임.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전송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의 일부인 1/3 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DVD의 두 번째 디스크에서 파일을 추출 및 복제하는 과정에서 분할된 것으로 추측되는바, 공정이용 판단의 적극적 요소로 보기에 어렵다고 할 것임. 또한 심의대상 카페는 “◇◇ ◇◇◇◇◇◇”라는 이름으로 해당 애니메이션의 극장판 시리즈 공유 목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며, “◇◇◇◇◇” 게시판에서 불법 복제된 영상물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복제물을 영리적·계속적으로 이용 중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은 개봉한 지 6년이 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조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합법 시장의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합하면, 순번 1번은 불법복제물의 일부 분량만을 제공 중인 특이점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단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 사안과 달리 불만한 사정이 없으며, 공정이용으로 보기에다 어려운바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 권고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4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번~24번은 2021. 10. 7. 제267회 심의위원회(4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크리에이터 후원 서비스 '◇◇' 내에 개설된 음악가 '◇◇◇' 팬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 '◇◇◇◇◇'가 '◇◇◇'의 정규 음반 수록 음원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이용자는 각 음원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및 mp3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복제·전송하고 있음. 민원인이 이의신청한 총 10개의 게시물 중 5개의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임.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온라인서

이 중 5건의 게시물이 삭제되었음(순번 15번, 19번, 20번, 23번, 24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색화면을 제시하면서)1집 및 2집의 경우 순번 18번의 클래식 악곡을 제외하면 모두 ◇◇◇ 본인의 저작물이며 (작곡 및 작사), 3집 수록된 순번 24번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임. 모두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저작물로 검색은 되고 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한 결과 ◇◇◇이 아니라 권리출판사인 ◇◇◇◇◇◇◇◇◇◇이 신탁 주체인 것으로 확인됨.

4분과위원회는 해당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음반제작자 및 저작인격권자 측이 불법복제물 게시 사실을 목인하고 있다고 불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음. 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가 홍보 목적으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아닌 자가 권리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파일을 게시물에 첨부 형태로 업로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재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오로지 음악의 전체 분량을 각자 소장하여 듣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 내 게시된 일부 음원의 경우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합법시장의 유통이 상당 기간 중지된 음원인 등 합법시장 상황과 관련한 다소의 특이사항은 있음. 이러한 특수성 및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저작인격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확인된다면 저작재산권의 침해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를 재고할 여지도 있음.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음반제작자, 저작인격권자 등 권리자

의 허락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심의대상 온라인서비스 내에 제3자인 이용자가 게시한 음원에 대해 음반제작자 또는 저작인격권자가 적극적인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유행위를 허락한 것과 같이 보기도 어려움. 저작권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저작인격권자가 이용허락 등 권한이 없을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자 측이 온라인서비스 내 후원 페이지의 관리자라고 하여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음.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가결의견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2021. 11. 15. 현재 이미 삭제되어 삭제 및 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5건(순번 15번, 19번, 20번, 23번, 24번)의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보호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에게 이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2021. 11. 2. 민원인에게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함.
- B 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는 크게 이의가 없으나, 보고서 일부 문구

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각 권리출판사로 기재된 자 및 그 양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검토되었으나,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출판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함.

또한 검토보고서 18 페이지에 “4분과위원회는 해당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음반제작자 및 저작인격권자 측이 불법복제물 게시 사실을 묵인하고 있다고 불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음.”이라고 검토 보고하였으나, 저작자라고 수정하는 것이 합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당초에는 저작재산권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자’라고 명시하여 보고하였음. 해당 음원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자가 명시적으로 이용허락을 하였다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차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저작자로 수정하여 보고드리겠음.
- A 위원: 음악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게시물에 대한 이의신청 건은 이용허락 등에 관한 증거제출이 없으므로 시정권고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순번 15번, 19번, 20번, 23번, 24번은 현재 삭제되거나 전송중단 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B 위원: 순번 15번~24번은 2021. 10. 7. 제2021-267회 4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2021. 11. 15. 현재 이미 삭제되어 삭제 및 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5건의 겨우 경고의 시정 권고만을 합이 타당함.

- C 위원: 순번 15번~24번은 시정권고를 받은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순번 15번, 19번, 20번, 23번, 24번은 현재 전송 중단된 상태이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순번 15번~24번은 시정권고를 받은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저작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어 있어 저작자가 이용허락 등 권한이 없는 점, 권리자가 적극적인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유행위를 허락한 것과 같이 보기도 어려운 점, 저작자 측이 온라인서비스 내 후원 페이지의 관리자라고 하여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순번 15번, 19번, 20번, 23번, 24번은 현재 전송 중단된 상태이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6번~18번, 21번, 22번은 가결하고, 순번 15번, 19번, 20번, 23번, 24번은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5번~162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

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3,23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SW,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5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1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32분을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21. 9. 1.에 개봉한 미국 영화이며,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서비스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SW 'AutoCAD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12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AutoCAD 2022'를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한·영 겸용 파일과 음성해설 설치 영상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이며, 라이선스 이용료는 1년에 약 210 만원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25번~1623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5번~162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59913호, 159917호, 159918호, 159921호, 159922호(순번 15번, 19번, 20번, 23번, 24번)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59899호~159912호(순번 1번~14번), 제2021-159914호~159916호, 159919호, 159920호(순번 16번~18번, 21번, 22번), 제2021-159923호~161521호(순번 25번~162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2021년 제3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1. 24.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